

## DDA 홍콩 각료회의 각료선언문 개요

제6차 WTO 각료회의가 12월 13~18일간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그룹별 협상 의장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부록으로 포함하여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쟁점과 향후 협상 일정에 대한 계획을 담은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각료선언문의 내용을 소개한다.

(1) 각료들은 지난 2004년 8월 1일 합의한 결정과 도하에서 채택한 선언문 및 결정들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것들이 효력이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재확인한다. 또한 도하 작업계획을 완전히 완료하고, 협상을 2006년에 종결하기로 한 결정을 새롭게 한다.

(2) 각료들은 도하작업계획에서 개발 측면이 협상의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래와 같은 농업 분야의 협상 결과와 개발 관련 의제들에 관한 규율을 만듦에 있어 이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재다짐한다.

(3)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에 합의한다.

(4) 각료들은 도하 각료선언문 13조와 기본 골격에 명시되어 있는 농업 협상에 주어진 위임사항들을 재확인한다. 각료들은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이 자신의 책임 하에 작성한 보고서를 채택한다. 또한 2004년 이후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전 사항들을 환영한다.

(5)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총 AMS와 무역왜곡보조 총액 감축 시 3개의 구간을 정하여 높은 구간에 있는 국가들에는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기로 한다. 또한 AMS와 무역왜곡보조 총액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지급수준을 가진 국가는 최상위 구간에 배치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지급수준을 가진 국가들은 차상위 구간에, 모든 개도국을 포함하여 나머지 국가들은 최하위 구간에 속한다. 또한 하위 구간에 속한 선진국 중 상대적 기준으로 AMS 양허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AMS 감축시 추가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최종 양허 AMS와 무역왜곡보조 총액, 품목특정 및 품목불특정 de minimis의 감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다. 무역왜곡보조 총액의 감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규정은 앞으로 마련될 것이다. AMS 최종 양허수준과 블루박스, de minimis의 감축 총액이 무역왜곡보조 총액의 감축 폭보다 낮다 하더라도 무역왜곡보조 총액의 감축에 대한 규정은 마련될 필요가 있다. AMS가 없는 개도국들은 de minimis와 무역왜곡보조 총액의 감축을 면제한다. 기본 골격 16조에 따라 그린박스 규정을 재검토하고 특히 무역왜곡효과가 없는 프로그램들의 개도국 활용 여부를 확인한다.

(6) 각료들은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를 동일한 일정에 따라 철폐하고, 2013년에 효력이 중지되는 수출경쟁 분야 관련 조치들에 대한 규율을 확인한다는 데 동의한다. 또한 이 작업은 모델리티에 명시된 대로 점진적이고 병행주의에 입각하며, 이행기간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각료들은 180일 이하의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등과 관련된 규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각료들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재정 조달은 자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의 원리에 입각하여야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용 기간이 길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수출국 영기업의 무역왜곡적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들을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구속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수출국영기업들의 독점력을 규제하여 수출국영기업들이 수출보조, 정부 재정지원, 손실 보험 등을 독

점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식량원조와 관련하여, 각료들은 식량원조를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식량원조 수혜국들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따라서 긴급 상황을 위한 지원에 장애가 없도록 순수한 식량원조를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식량원조의 상업적 우회는 확실하게 철폐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따라서 각료들은 현물로 지급하는 식량원조와 금전적 원조, 재수출 등에 관한 실질적인 규율을 마련하는데 합의한다.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보험, 수출국영기업과 식량원조에 대한 규율은 모델리티가 확정되는 006년 4월30일까지 마련하고, 그 결과에는 최빈개도국과 식량순수입개도국의 관심 사항을 반영하도록 한다.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를 철폐하기로 한 시점은 모델리티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 확정될 것이다.

(7) 시장접근분야에서는, 종가세 상당치와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식한다. 각료들은 구간별 관세감축시 구간을 네 개로 나누는데 합의하였으며, 구간의 경계에 대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대우를 감안하여 향후 협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각료들은 민감 품목과 관련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민감 품목의 대우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한 특별품목의 선정과 대우 및 특별수입구제조치(SSM) 관련 요소들에 관해 최근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지한다. 개도국들은 식량원조, 생계보장, 농촌개발 등 세 개의 기준을 바탕으로 한 지표들을 근거로 삼아 자율적으로 적절한 수의 세번을 특별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또한 개도국들은 SSM 발동시 물량 기준 발동요건과 가격 기준 발동요건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특별품목과 SSM은 모델리티와 농업협상 결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8) 기타 개도국 우대조치와 관련하여, 각료들은 국내보조, 시장접근, 수출경쟁 등 세 개 협상 분야의 쟁점들에 대해 기본 골격에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관해 진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식한다.

(9) 각료들은 열대상품, 마약 작물로부터의 생산 다각화, 개도국들의 특혜 문제 등에 대해, 여기에서 합의한 어떤 것도 이미 기본 골격에서 합의된 내용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10) 그러나 각료들은 모델리티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각료들은 협상을 종결하기 위해 모든 쟁점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모델리티를 2006년 4월 30일까지 마련하고 각국이 이행계획서를 동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기로 결의한다.

(임소영 lsyjr@krei.re.kr 02-3299-42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